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계약 관련 법령과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이중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, 동일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기간만큼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감경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호 중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를 “제1호 및 제3호”로 한다.

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동일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감경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“중소기업중앙회장”을 “수탁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성능인증의 대상 제품)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(이하 “성능인증”이라 한다)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 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 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제품으로 한다.	제10조(성능인증의 대상 제품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<u>제1호부터 제3호까</u> <u>지</u> 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기 관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 여 성능인증을 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	4. ----- <u>제1호 및 제3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